

#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Copyright-Using Charge Regulations for the Perform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정 경 희(Kyoung Hee Joung)\*\*

### < 목 차 >

I. 서론	IV.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 현황 분석
II. 공연권 및 그 제한 규정에 대한 이해	1. 조사방법
1. 영상저작물과 공연권	2. 분석결과
2. 공연권 제한 규정	V. 논의 및 제언
3.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호	1. 분석결과 요약
III. 영상저작물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 분석	2. 논의
1. 개정경과	3. 제언
2.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분석	VI.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도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년·월·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키워드: 공연권 제한,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저작권료 징수규정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egitimacy issues of the current regulation for the copyright-using charge and the plans to revise the regulation for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public libraries.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size of auditoriums in the 84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e with information on the library websites from February 2012 to January 2013.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at yearly charging for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rks to the less than 6 months after publishing will be suitable than the current monthly charging. Also,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opyright agency for cinematographic works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copyright works received in trust.

Keywords: Cinematographic works, Right of public performance, Limitation to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Public library, Regulation for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rks

\* 본 논문은 2013년 5월 31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 논문접수: 2013년 11월 21일 • 최초심사: 2013년 11월 30일 • 게재확정: 2013년 12월 13일

## I. 서론

도서관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8호에 따라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8년 2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도입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징수규정」이 공고되었으나, 올해 1월 다시 이에 대한 개정안이 공고되었다.

도서관 입장에서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사용료 징수 대상 행위의 문제이다. 공고된 징수규정 개정안에는 시청각실에서의 대규모 영화상영 뿐만 아니라 개별 좌석 또는 관내의 대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별좌석에서의 영상저작물 시청 행위가 공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2012년 11월에 승인된 징수규정에는 공연장에서의 집단상영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올해 초 공고된 징수규정 개정안에는 다시 개별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는 집단상영에 대하여 책정된 이용료와 그것을 책정한 과금 기준이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현행 징수규정 및 개정안들은 매우 다양한 이용료와 과금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저작물의 공연 현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위의 징수규정의 문제 중 두 번째 즉, 집단상영에 대한 과금기준과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공연권 및 그 제한 규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고된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들과 현행 징수규정의 내용을 도서관의 집단상영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징수규정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하여 도서관에서의 공연 횟수,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의 발행일 및 신탁여부, 공연장의 좌석수를 조사하였다.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진 반면 공연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에 도서관의 개별 시설에서의 영상저작물 시청이 공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법리적 검토<sup>1)</sup>와 실증연구<sup>2)</sup>로 이루어진 바 있다.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연구로서는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비율

1) 이호신,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1호(2013. 3), pp.249-268.

2) 정경희,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2012. 8), pp.133-155.

과 그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저작권법에 사용료 징수규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sup>3)</sup> 또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과 분배규정에 대한 연구<sup>4)</sup>에서 징수규정은 정부와 징수 대상업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분배규정은 공인된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른 검증결과에 기반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면서 그러한 실태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표본설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II. 공연권 및 그 제한 규정에 대한 이해

### 1. 영상저작물과 공연권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 제2조의 1)”을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4조에서 저작물의 예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9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법 제2조의 13)”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상영하는 극영화 뿐만 아니라 뉴스영화, 기록영화 등도 창작성이 있다면 영상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또한 TV용 영화, 광학적 필름에 의한 영화, 자기 테이프를 사용한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디스크에 연속적인 영상을 수록한 레이저디스크 등을 매체로 한 영화도 영상저작물이다.<sup>5)</sup>

도서관이 이러한 영상저작물을 시청각실 등 다수의 이용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설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권’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 등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공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의 3)”이다. 영상저작물의 공연은 이 중에서 주로 상영과 재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상영은 공중이 시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작물을 모든 종류의 화면에 현시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영상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진, 미술, 어문저작물도 상영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재생은 상연이나 연주 등의 복제물을

3) 이영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동시 전송에 대한 법적 분류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3호(2009. 6), pp.221-240.

4) 이계오, 정연수, “노래연습장, 유희·단란주점의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개선안 연구,”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2012. 5), pp.315-331.

5) 오승중, 저작권법, 제2판(서울 : 박영사, 2012), p.131.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4호)

재생하여 공중에 공개하는 것이며, 판매용 음반이나 DVD를 구입하여 커피숍, 백화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기계적 또는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sup>6)</sup> 즉, 도서관이 DVD를 다수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연의 행위 중 상영과 재생에 해당한다.

### 2. 공연권 제한 규정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떠한 저작물이던지 기본적으로 선인들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생산된다는 저작물의 공유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로 창작자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 입법, 행정 목적의 이용,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다른 기본권, 즉 언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과의 조화를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한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이 그 예이다.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용 복제의 경우에도 저작권 재산권은 제한된다. 또한 거래 비용으로 인한 저작권의 효과적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에 대하여 공연권을 제한하는 것이 그 예이다.<sup>7)</sup>

국내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동조 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1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의 목적이 비영리적이어야 하고, 둘째, 공연의 시청자나 제3자로부터 해당 공연과 관련하여 입장료나 회비, 기부금 등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며, 셋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넷째, 실연자에게 실연의 대가로 지급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sup>8)</sup>

동조 2항은 공연 중 특히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 즉,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조 2항)." 1항과 달리 2항은 공연의 목적이 비영리성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지만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단서 규정을 통한 예외를 두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영화 상영은 2항에 해당된다. 즉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영화관람에 대한 입장료

6) 상계서, p.425.

7) 임원선, 저작권법(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pp.176-177.

8) 오승중, 전계서, p.623.

나 회비, 기부금을 받지 않을 경우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상영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는 이 단서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8호가 도서관에 대한 제한 규정이다.

### 3.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호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호<sup>9)</sup>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시·군·구민회관 등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은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조항은 2005년 12월 30일 시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9호로 도입되었다. 시행령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을 제한하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상저작물 제작자의 권익이 훼손됨에 따라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영화의 극장 상영 활성화 및 비디오 대여점의 활성화 등으로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sup>10)</sup> 이후 2007년 6월, 2009년 7월에 개정되었으나 제2조에서 제11조로 조가 변경되거나, 9호에서 8호로 호가 변경되었을 뿐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2005년, 2007년 개정에서는 모두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2009년 개정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으로 수정하여 공연의 여러 가지 유형 중 재생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용 영상저작물은 1인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생산된 것이며 그에 맞게 가격이 책

9)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10)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이유(2005. 12. 30 시행[일부개정]) (법제처 저작권법시행령 제·개정이유)

정된 것이므로 이를 넘어선 이용 즉, 다수를 위하여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저작권자의 재산적 손실이 일어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공연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도서관에서의 공연이라도 최소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공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에서의 영화 상영을 앞서 논의한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동법 시행령 제11조 8호를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서 상영하는 DVD 혹은 비디오테이프 등은 그 수록된 내용이 창작성이 있을 경우 극 영화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뉴스 또는 기록영화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이다. 도서관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내용에 무관하게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재생의 방식으로 공연할 수 있다. 그러나 비 판매용 영상저작물은 발행 시점과 무관하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할 수 있다. 단, 두 경우 모두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아야 한다.

### Ⅲ. 영상저작물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 분석

#### 1. 개정경과

저작권법 제105조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동조 4항), 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5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에 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동조 6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7항).

영상저작물 신탁관리단체 중의 하나인 한국영상산업협회<sup>11)</sup>는 2006년 본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이하 「징수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 규정의 개정안을 승인기관인 문화

11) 한국영상산업협회는 1999년 8월 한국영상협회로 시작하여 온라인 불법영상물 감시 및 불법비디오물 단속사업을 실시해온 기관이다. 2004년 6월부터 한국영상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문화관광부의 허가(문화관광부 허가 제11호)를 받아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비디오감상실 등의 영상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징수업무 및 공공기관과 목욕장업에 대한 영상저작물 저작권사용료 징수 업무를 시작하였다.

체육관광부에 제출해왔으며, 저작권법 제105조 7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징수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경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징수규정」 관련 공고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징수규정」 제정 이후 2012년 9월 17일까지 5회에 걸쳐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를 하고 있었다. 이후 2012년 11월 22일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공고되었고, 곧이어 2013년 1월 4일 「징수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가 다시 게시되었다. 그동안의 개정안 공고 경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각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도서관 관련 규정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0년 12월, 2012년 1월, 2012년 3월에 공고된 개정안은 내용은 동일하고, 2012년 3월 개정안의 경우 조번호만 변경되었다.

<표 1>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및 개정안 공고 경과

공고일	공고내용	도서관 관련 규정 변경 여부
2006년	징수규정 제정	
2008년 2월 25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변경
2010년 12월 29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변경
2012년 1월 16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010년 12월 개정안과 동일
2012년 3월 19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010년 12월 개정안과 동일
2012년 9월 17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변경
2012년 11월 22일	개정 공고	변경
2013년 1월 4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변경

## 2.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분석

### 가. 2008년 2월 개정안

2006년 제정된 「징수규정」에는 공공기관 등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된 조항이 없었다. 이후 2008년 「징수규정」(개정안)에서 '공공기관에서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제6조) 규정이 신설되어 도서관을 포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호에서 언급하는 시설 모두에 적용되었다.

2008년 개정안 제6조는 공연장에서의 공연과 공연장 이외의 공연가능 설비에서의 공연 2종류에 대하여 과금하고 있다.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좌석수를 기준으로 월정액을 1~50석 30,000원 ~ 500석 80,000원을 부과하고 있다(<표 2> 참조). 예를 들어 100석 규모의 시청각실에서 1개월에 4회 공연시 횡수당 1만원, 1좌석당 100원인 셈이다. 개정안 설명서에는 월정액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4호)

이유를 사용횟수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량 및 이용 횟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2)</sup> 이 개정안은 좌석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과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판매용' 영상저작물이 아니라 '영상저작물'로 정하고 있으며, 월정액과 별도로 '협회의 영상저작물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애매모호한 비용이 추가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2> 2008년 2월 개정안 제6조 (공공기관 등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사용료)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시설에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협회의 영상저작물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공연장에서의 공연

좌석 수	월 정액	비고
1~50 석	30,000	
51~100석	40,000	
101~200	50,000	
201~300	60,000	
300~400	70,000	
400~500	80,000	

\* 도서 벽지 등 문화 소외지역 정품구매 이용의 조건으로 공연료 면제.  
(도서 벽지라 함은 행정구역상 거주인원 1만명 이하의 읍,면,리 지역)

나. 공연장 이외의 공연 가능 설비를 갖춘 공연

구분	기준단가	비고
설비 당	2,000원	
영상저작물 공연이 가능한 설비 수 X 2,000원		

나. 2010년 12월 개정안

2010년 12월 개정안 역시 도서관에서의 공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공공기관에서의 공연 전체에 대하여 제7조를 적용하고 있다(<표 3> 참조). 2008년 개정안과 달리 과금대상 저작물을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수정하였으나, 월정액이 2008년 개정안의 최저 20배~최고 37배로 증액되었다. 예를 들어 100석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4회 상영시 1회 25만원, 1좌석당 2,500원에 해당하는 사용료이다. 이전 개정안에 비해 실로 엄청난 금액을 책정하였지만 그에 대한 과금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2)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표 3> 2010년 12월 개정안 제7조 (공공기관 등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사용료)

저작권법시행령 제 11조 제8호의 시설에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협회의 영상 저작물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공연장에서의 행사용 공연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행사용 공연(문화의 밤, 시민의 밤, 가족의 밤 등)에서의 공연료는 다음과 같다.(회당)

좌석수	월정액	비고
1~50석	600,000	
51~100석	1,000,000	
101~200석	1,500,000	
201~300석	2,000,000	
300~400석	2,500,000	
400~500석	3,000,000	

※ 도서 벽지 등 문화 소외지역 정품구매 이용의 조건으로 공연료 면제.(도서 벽지라 함은 행정구역상 거주인원 1만명 이하의 읍,면,리 지역)

나. 가목 이외 개별공연 설비에서의 공연(회당)

좌석수	개별 공연
~ 15	40,000
~ 30	60,000
31 ~	80,000

다. 2012년 9월 개정안

2012년 9월 개정안은 그동안 공공기관 등의 공연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던 것과 달리 도서관에서의 공연사용료를 제8조로 신설하고 있다. 그런데 과금 대상에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명시가 없다. 집단상영에 대한 과금을 그동안 개정안에서와 달리 지역<sup>13)</sup> 좌석수, 상영횟수, 관람자수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월정액을 최대 9회 상영 기준으로 상한가를 책정하고, 10회 이상일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표 4> 참조). 예를 들면 A지역 도서관이 100석 규모 시청각실에서 월 4회 공연할 경우 월 21만원이 부과된다. 즉, 회당 52,500원이며 좌석당 525원이 부과된 금액이다. 이 개정안은 월정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책정하여 2010년 12월 개정안에 비해 대폭 인하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석, 대출, 공연을 혼합한 요금납부시 할인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8조 라항에서 도서관 전용 판매용 영상저작물 구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영상저작물 가격의 2배를 지불하고 도서관 전용 영상저작물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한 최소구매 수량을 협의해야한다는 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용료 징수단체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의 공연 및

13) 지역구분: A지역(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B지역(광역시), C지역(그밖의 지역)이다.(2012년 9월 『징수규정』(개정안) 제6조 비디오감사실 등의 공연사용료)

대출 등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영리적인 목적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2012년 9월 개정안 제8조 (도서관 등에서의 공연사용료)

도서관 시설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 또는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 중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가. 관내/외 대출시

구 분	영상물관내대여(시청제공) 이용객수(월)	월사용료 상한가격(원)	비 고
A지역	500명 이상	180,000	A지역 평균 이용객수 (월)600명 * 사용료 300(원) = 180,000원
	400이상~500미만	135,000	
	400명 미만	105,000	
B지역	300명 이상	90,000	
	200이상~300미만	75,000	
	200명 미만	50,000	
C지역	제한 없음	40,000	
D지역	제한 없음	30,000	
도서지역	제한 없음	무료	

※ 영상저작물을 도서관 내부 및 외부대출 하거나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개별 장비를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나. 집단상영(단체관람)시

구분	관람석수	상영횟수	월사용료 상한가격(월/원)	비고
A 지역	100석 이상	월10회미만	300,000	300원 계산
		월 7회미만	210,000	
		월 4회미만	120,000	
	50이상~100석 미만	월10회미만	180,000	평균 1회 60명 계산
		월 7회미만	126,000	
		월 4회미만	72,000	
	50석 미만	월10회미만	120,000	평균 1회 40명 계산
		월 7회미만	84,000	
		월 4회미만	48,000	
B 지역	50석 이상	월10회미만	150,000	평균 1회 50명 계산
		월 7회미만	105,000	
		월 4회미만	60,000	
	50석 미만	월10회미만	90,000	평균 1회 30명 계산
		월 7회미만	63,000	
		월 4회미만	36,000	
C지역	제한없음	횟수무관	30,000	
D지역	제한없음	횟수무관	20,000	
도서지역	제한없음	횟수무관	무료	

※ 영상저작물을 도서관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 공연을 하는 경우  
※ 단, 월 10회를 초과하여 상영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를 산정한다.

<표 4> 2012년 9월 개정안 제8조 (도서관 등에서의 공연사용료) - 계속

다. 관내/외 대출 및 집단상영(단체관람) 공연장에서의 공연

구분	공연좌석수+개인시청각 설비	상영횟수	월사용료 상한가격(월/원)	관내/외 대출 시청제공
A지역	100석 이상	관내외대출+월10회	300,000	400명*300원 =120,000원 추가
		관내외대출+월7회	210,000	
		관내외대출+월4회	120,000	
	50석이상~100석미만	관내외대출+월10회	180,000	300명*300명 =90,000원 추가
		관내외대출+월7회	126,000	
		관내외대출+월4회	72,000	
	50석 이하	관내외대출+월10회	90,000	200명*300원 =60,000원 추가
		관내외대출+월7회	63,000	
		관내외대출+월4회	36,000	
B지역	50석 이상	관내외대출+월10회	150,000	150명*300원 =45000원 추가
		관내외대출+월7회	105,000	
		관내외대출+월4회	60,000	
	50석 미만	관내외대출+월10회	90,000	100명*300원 =30,000원 추가
		관내외대출+월7회	63,000	
		관내외대출+월4회	36,000	
C지역	제한없음	관내외대출 및 횟수 무관	50,000	20,000원 추가
D지역	제한없음	관내외대출 및 횟수 무관	30,000	10,000원 추가
도서지역	제한없음	관내외대출 및 횟수 무관	무료	무료

※ 영상저작물을 도서관에서 가항 나항 모두 이용할 경우  
 ※ 단, 월 10회를 초과하여 상영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한다.  
 ※ 각 급 지역구분은 제6조 비고1)을 준용한다.

라. 도서관 전용 판매용 영상물 구입시  
 도서관 전용 판매용 영상물 + (도서관 전용판매용 영상물 \* 기존 판매용 영상물 가격 2배)  
 ※ 영상저작물을 도서관에서 이용함에 있어 가항 나항 다항 이외에 공연권이 처리된 영상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단, 라항의 경우 도서관협회를 통해 최소 구매 수량을 협의하여야 함)

라. 2012년 11월 개정 징수규정

2012년 9월의 복잡한 개정안 이후 2개월 후인 11월에 『징수규정』 개정 공고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은 제8조에 도서관 등에서의 공연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8조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과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로 과금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동안의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이외의 개별 설비나 심지어 관내외 대출 등에도 무분별하게 과금하고 있었다면, 개정된 규정에는 단체 관람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 소장된 DVD가 아니라 전송 방식에 의한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금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표 5> 참조).

이 규정에서는 좌석수와 상영횟수를 조합하여 최소 1만원~최대 6만원을 과금하고 있다. 100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4회 상영시 1만 5천원으로, 회당 3,750원, 좌석당 38원에 해당한다. 이것은

2008년 8월 개정안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이다.

개정된 징수규정은 도서관 전용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구입할 경우 일반 판매용 영상저작물 가격의 3배를 지불하고 구입하되, 최소구매수량을 도서관 규모와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2012년 11월 개정 징수규정 제8조 (도서관 등에서의 공연)

① 도서관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집단상영(단체관람) 시(단위: 원/월)

좌석 수 (석)	상영 횟수		
	1-5회	6-10회	11회~
50 이하	10,000	20,000	30,000
51~100	15,000	25,000	35,000
101~200	20,000	30,000	45,000
201~300	25,000	35,000	50,000
300~400	30,000	40,000	55,000
400 이상	35,000	45,000	60,000

비고1) 행정구역상 거주인원 1만 명 이하의 읍면이나 도서벽지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비고2) 도서관 대상 전송서비스에 의하여 단체관람 제공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도서관에 제공하는 전송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공연권이 포괄 처리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서관 공연목적 구입 시  
(판매용 영상저작물 가격 × 3) × 최소구매수량  
비고1) 이 호에 의하여 도서관 전용영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제1호의 사용료는 면제된다.  
비고2) 최소구매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실태를 고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도서관 이외에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제8호의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에 관하여 준용한다.

마. 2013년 1월 개정안

2012년 11월 개정 공고된 현행 「징수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약 1개월 후에 다시 공고되었다. 2012년 11월 「징수규정」과 달리 집단상영과 함께 개별 설비에서의 상영에 대해서도 과금하고 있다. 과금기준으로 좌석수와 횟수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 4만5천 ~ 최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표 6> 참조). 예를 들어, 100석 기준 월 4회 공연시 월정액 9만원이 부과되므로, 1회 22,500원, 1좌석당 225원에 해당한다. 2012년 11월 개정공고된 규정의 사용료 기준 6배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100석 이상 규모에서의 상영 및 월 11회 이상 상영시 협회와 별도 협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개정안에서와 달리 본 개정안은 과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sup>14)</sup> 그 근거는 불법복제 웹하드를 통한 다운로드 금액인 350원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유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및 VOD

가격이 2,500~3,000원이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감안하여 최소 금액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른 산식 근거로 좌석당 300원을 과금한 후 상영 횟수를 곱하여 50석인 경우 총액의 60%, 100석인 경우 총액의 50%를 과금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0\text{좌석} \times 300\text{원} \times 5\text{회} \times 60\% = 45,000\text{원}, 100\text{좌석} \times 300\text{원} \times 5\text{회} \times 50\% = 75,000\text{원}$$

이 개정안도 도서관 전용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일반 영상저작물 가격의 3배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표 6> 2013년 1월 개정안 제8조 (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

도서관 시설에서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에 한함)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개별 공연 시

구 분	기준단가	비 고
인 원 수	350원	
이용 편수 × 인원 수 × 기준단가		

※ 판매용 영상물을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개별장비를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 이용자 수는 사용자가 제공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되,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산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2. 집단상영(단체관람)시(월/원)

좌석수	상영횟수	
	1~5회	6~10회
50이하	45,000	75,000
50~100	90,000	150,000

※ 판매용 영상물을 도서관내 집단상영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 공연을 하는 경우  
 ※ 단, 월 10회를 초과하여 상영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를 산정하며, 101석 이상의 규모의 경우 별도 협의.  
 비교1) < 현행과 동일 > 비교2) < 현행과 동일 >

3. 도서관 공연목적 구입 시  
 (판매용 영상저작물 가격 × 3) × 최소구매수량  
 비교1) 이 호에 의하여 도서관 전용영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제1호, 제2호의 사용료는 면제된다.  
 비교2) < 현행과 동일 >

② <삭 제>  
 비교3) 저작권법 제29조 1항, 2항에 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금까지 「징수규정」 개정안 및 개정 내용으로 볼 때 도서관에서의 공연에 대한 과금은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부

14)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013. 1.

과되며, 이 저작물이 공연되는 공연장의 좌석수와 공연횟수가 중요한 과금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과금기준의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V.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 현황 분석

### 1. 조사방법

『2012 경기도공공도서관연감』<sup>15)</sup>에 의하면 2012년 3월 현재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은 177개관이다. 본 연구는 177개관 중에서 사립도서관을 제외하고 시립도서관과 시에서 위탁한 도서관 151개관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공연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도서관의 웹사이트에 2012년 2월 ~ 2013년 1월까지 1년간의 영화상영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지사향’, ‘문화행사’, ‘문화강좌’, ‘문화프로그램’, ‘도서관서비스’, ‘문화강좌’, ‘참여마당’, ‘열린공간’ 등 다양한 메뉴 아래에 영화상영 정보가 게시되어 있었다. 또한 상영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개월수도 다양하였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상영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도서관 84개관(25개 지방자치단체)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지역으로는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의 80.6%, 경기 지역 177개 공공도서관의 47.5%를 도서관을 조사하였다.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공연 빈도,<sup>16)</sup> 둘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관리하는 신작 저작물 중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 빈도, 셋째, 공연장의 좌석규모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영상저작물 상영일, 제목, 상영장소 및 관람석 수를 조사하였다.

도서관에서 상영된 영상저작물이 발행된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행정보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Yes24’와 ‘인터파크’ 등 인터넷 서점에서 발행일을 파악하였다. 그 이유는 영화가 상영된 공공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에는 발행년만 제시되어 있고, 한국영상자료원 목록에는 제작년도만 제공되고 있었지만, 인터넷 서점의 경우 발매년월일 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점의 경우 DVD 발행사에서 서점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소개와 서평자료를 제공해주면서 발행일 정보도 함께 자료로 제공하므로 발행정보가 상세히 입력되어 있다.<sup>17)</sup>

15)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2 경기도공공도서관연감(수원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2), pp.412-417.

16) 본 조사에서는 상영된 영상저작물이 ‘판매용’인지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상영된 거의 모든 저작물이 판매용이었기 때문이다.

17) Yes24 DVD 자료입력 담당자와 전화상담. 2013년 4월 26일.

상영된 영상자료가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개월수로만 산정하였다. 이것은 발행일이 일반적으로 월 기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일에 발행된 경우 2013년 2월 2일부터는 6개월이 경과된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2월 28일에 상영한 경우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신탁현황은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단체인 한국영상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 기관 홈페이지에는 신탁 및 위임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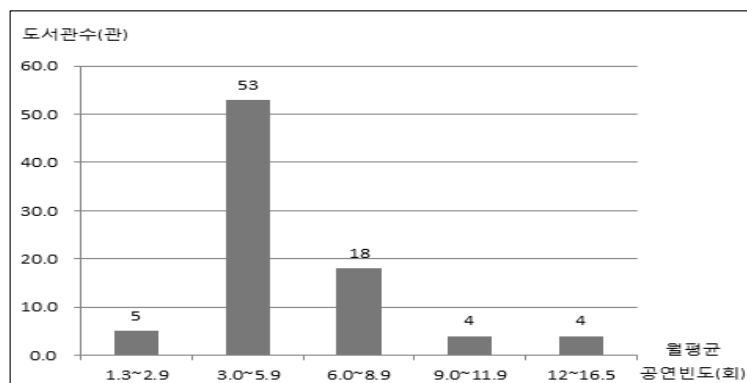
## 2. 분석결과

### 가. 영상저작물 공연 빈도

84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연 정보가 제시된 개월 수는 총 874개월로 평균 1개관당 10.4개월간 상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기간 총 공연 횟수는 4,953회로 84개 도서관이 월평균 5.7회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평균 공연 빈도는 최소 1.3회, 최대 16.4회까지 1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격차가 많았다. 따라서 조사대상 도서관의 1%에 해당하는 8개 도서관을 평균을 중심으로 최저 빈도 8개관, 최고 빈도인 8개관을 제외하고 월평균 공연빈도를 산출해보니 5.0회였다.

월평균 공연빈도를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즉, 월평균 3.0~5.9회를 상영하는 도서관이 조사대상 도서관 중 53개관(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6.0~8.9회는 18개관, 9.0~11.9회는 4개관, 12.0~16.5회는 4개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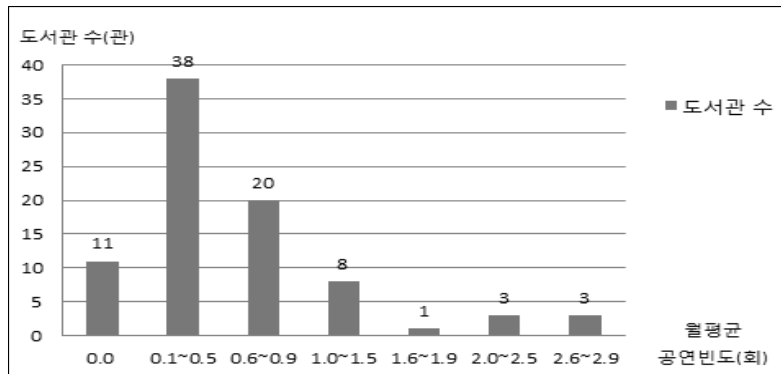
도서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꽤 큰 차이가 있었다. A시의 경우 조사 도서관 9개관의 월평균 공연빈도가 10.7회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M시는 8.4회였다. H시 역시 7.8회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D시의 경우 3회, G시 3.5회로 평균보다 낮았다.



<그림 1> 월평균 영상저작물 공연 빈도

나. 발행 후 6개월 미만 영상저작물의 공연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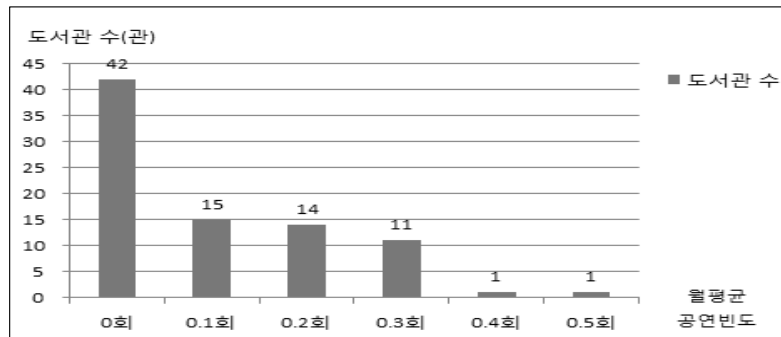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공연빈도는 월평균 0.6회였다. 조사기간 중 총 4,953회 공연 중 10.9%인 540회가 6개월 미만 자료를 상영한 경우였다. 앞서 일반적인 영상저작물의 공연 빈도는 도서관간 차이가 12배에 이를 정도로 컸는데,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은 그 차이가 비교적 적었다. 6개월 미만 자료의 월평균 공연 빈도가 0.1회~0.5회인 경우가 38개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0.6~0.9회인 경우가 20개관이었다. 6개월 미만 자료를 전혀 상영하지 않은 도서관도 11개관이었다. 월평균 1회 이상 공연하고 있는 도서관은 15개관이었다.



〈그림 2〉 발행 후 6개월 미만 영상저작물의 월평균 공연 빈도

다. 신탁된 영상저작물의 월평균 공연 빈도

조사대상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공연한 횟수는 540회였는데, 이중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신탁된 영상저작물을 공연한 경우는 82회였으므로 15.2%만이 사용료 징수기관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또한 신탁된 자료의 월평균 공연 횟수는 0.1회였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월 미만 영상저작물 중 신탁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연한 경우가 42개관으로 조사대상의 50%였다. 월평균 0.1~0.3회 공연한 도서관이 40개관, 0.4~0.5회가 2개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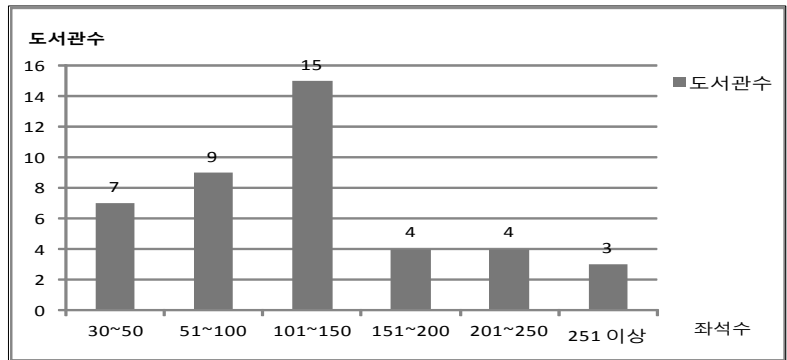


〈그림 3〉 6개월 미만 영상저작물 중 신탁자료 월평균 공연 빈도



라. 좌석규모

홈페이지에 영상저작물을 공연한 시설의 규모를 좌석수로 밝혀 놓은 곳은 42개관으로 조사대상 도서관의 50.0%였다. 42개관 중 공연에 따라 다른 시설을 사용한 곳이 2개관이었는데 이 경우 공연횟수가 더 많았던 곳으로 선택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좌석수가 101~150석인 공연장에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도서관이 15개관(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1~100석 9개관(21%)이었다. 30~50석은 7개관(17%), 151~200석 4개관, 201~250석 4개관, 251석 3개관이었다.



<그림 4> 영상자료 공연시설의 좌석수

V. 논의 및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84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 상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저작물 공연 횟수는 월평균 5.7회였으며, 3~5.9회 상영하는 도서관이 53개관으로 조사대상 도서관의 63.0%였다.

둘째,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상영은 전체 상영의 10.9%였고, 월평균 0.6회였다. 한 번도 상영하지 않은 도서관은 11개관, 1회 미만인 경우가 69개관, 1회 이상인 경우가 15개관이었다.

셋째,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상영 중 15.1%만이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신탁된 저작물을 상영한 경우였다. 신탁된 영상저작물의 월평균 상영 횟수는 0.1회였다. 발행 후 6개월 미만인 신탁된 영상저작물을 상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도서관이 42개관으로 조사대상 도서관의 50.0%였으며, 월평균 0.1~0.3회 40개관, 0.4~0.5회가 2개관이었다.

넷째,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공연장의 좌석수는 101~150석인 경우가 15개관이었는데, 이는 조사대상 도서관의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1~100석, 30~50석, 151~200석, 201~250석, 251석 이상 순이었다.

## 2. 논의

### 가. 과금 책정 기준의 문제

#### 1) 공연빈도수

2012년 9월 「징수규정」 개정안 이후 공연 횟수가 월정액 부과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2012년 9월 개정안에서는 1~4, 5~7, 8~10회 3단계, 2012년 11월 규정은 1~5, 5~10, 11회 이상으로 3단계, 2013년 개정안은 1~5, 6~10회의 2단계로 구분하고, 10회 초과시 별도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산정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징수규정」은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중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신탁 혹은 위임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과금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 과금대상이 되는 영상 저작물의 상영횟수는 월평균 0.1회였다. 과금대상이 되는 영상저작물을 한 번도 상영한 적이 없는 도서관이 42개관으로 조사대상 기관의 50%였으며, 40개관은 0.1~0.3회, 2개관은 0.4~0.5회였다.

앞서 살펴본 징수규정은 공연횟수를 최소 월 1~5회로 설정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상영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금대상이 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하지 않는 도서관의 경우 징수규정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은 도서관은 현재의 징수규정이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이용료를 내기에는 그 과금체계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현재의 사용료 징수규정 혹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상저작물을 과금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 공공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 공연 횟수는 월평균 5.7회였고, 1~5.9회 53개관, 6~11.9회 24개관, 12~16.5회 4개관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이 모두 포함된 것이었다. 또한 상영되었던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이 모두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신탁되었다고 간주하더라도 그것의 월평균 상영횟수는 0.6회였고, 한번도 상영하지 않은 경우가 11개관, 1회 미만인 경우가 58개관, 1~1.9회가 9개관, 2~2.9회 6개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탁여부에 무관하게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상영에 대하여 과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 및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 1~5회, 6~10회라는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다.

#### 2) 좌석수

좌석수는 2008년과 2010년 「징수규정」 개정안에서 월정액을 부과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되었

다. 이후 2012년 9월 개정안과 2012년 11월 규정, 2013년 개정안에서는 상영횟수와 조합하여 월정액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8년, 2010년 개정안과 2012년 11월 규정에서는 좌석수를 대략 50석 미만, 50~100석, 100석 이후 500석까지 100석 단위로 구분하여 모두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9월 개정안의 경우 수도권 과밀지역에 대해 50석 미만, 51~100석 미만, 100석 이상으로 3단계 구분하였고, 2013년 1월 개정안은 50석 이하와 50~100석 2단계로 구분한 뒤 101석 이상 규모인 경우 별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공연장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100~150석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100석, 50석 미만, 151~200석, 201~250석 순이었으며, 그 외 274석, 306석, 325석이 각각 1개관이었다. 2008년, 2010년 개정안 및 2012년 11월 규정에서 좌석수를 6단계로 구분하여 과금한 것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공연장 규모에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9월 개정안처럼 3단계로 좌석규모를 구분할 경우 가장 분포가 많았던 100~150석 규모의 도서관이 100석 이상으로 묶이고, 200석 이상인 도서관이 분포상 50석 미만인 도서관 수만큼 되는데 이것이 구분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101석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하도록 한 2013년 개정안은 60% 이상의 도서관이 별도 협의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별도 협의는 전체 이용료를 징수해야하는 기관들 중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해야지 대다수의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 나. 요금의 적정성 문제

앞서 분석한 5개의 개정안 및 현 규정에서 제시한 월정액을 1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월 4회 상영한 것을 기준으로 회당 비용 및 좌석당 금액을 살펴보면 2008년 「징수규정」 개정안은 1회 1만원, 좌석당 100원이며, 2010년 개정안은 1회 25만원, 1좌석당 2,500원, 2012년 9월 개정안의 경우 1회 52,500원, 좌석당 525원이다. 2012년 11월 「징수규정」의 경우 1회 3,750원, 좌석당 38원이며, 2013년 개정안은 1회 22,500원, 좌석당 225원이다. 요금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5년간 공고된 5회의 개정(안)에서 금액의 편차가 최소 1회 3,750원 최대 25만원으로 약 60배에 이른다. 2012년 11월에 개정된 「징수규정」과 그로부터 2개월도 안되어 다시 공고된 개정안 사이에도 6배의 금액 차이가 있다. 이러한 편차는 과금대상이 되는 영상저작물이 실제로 공공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이 상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본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착된 저작물을 상영한 횟수는 월 평균 0.1회고, 가장 자주 상영한 곳도 월 0.5회였으니 징수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낮은 금액이 부과된 2012년 11월 징수규정 역시 100석의 공연장일 경우 월 15,000원인데, 과금대상인 영상저작물을 가장 빈번히 상영했던 도서관이 월 0.5회 즉, 2달에 1회인데, 이를 위하여 월 15,000원을 영상저작물 사용료로 지불할 도서관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전

체 공공도서관에 이 비용을 적용하였을 경우, 약 780개관이 연간 지불해야 할 공연사용료는 약 1억 4천만원 정도이다.

### 3. 제안

#### 가.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 방안

앞서의 논의를 통하여 2012년 11월 개정된 현행 「징수규정」과 여러 차례 공고된 개정안에 제시된 사용료가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는 공공도서관에서 공연하고 있는 모든 영상저작물을 과금대상으로 상정한 사용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저작권법이 제29조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도록 부여한 이용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상영 횟수를 고려해볼 때 현재의 월정액제 보다는 1년 단위 금액이나 사용에 따른 개별적인 과금이 더 적절해보인다. 1년 단위로 과금하더라도 신탁된 영상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면 결국 지불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겨우 년 1~2회이므로 그 금액을 지금까지의 규정에서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금 기준으로는 현행 징수규정에서처럼 공연장 좌석수와 횟수를 기본으로 하되 년단위로 과금하더라도 횟수 책정구간이 1~2회, 3~4회 등으로 세분될 필요가 있다.

#### 나. 신탁관리 저작물의 확보

그런데 앞서 제안한대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할 때마다 도서관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이용허락 절차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이 공연했던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중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15.1%에 불과하였다. 즉, 신탁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도서관이 이용허락을 얻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그 연락처를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 신탁관리단체는 이러한 개별적인 이용허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다.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도서관에 계약체결을 제안하기에 앞서 신탁관리단체는 우선적으로 더 많은 영상저작물을 신탁받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다. 발행정보 관리의 필요성

또한 도서관이 상영하려고 하는 영상저작물의 발행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저작물은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이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는 발행년도 정보만 기술되어 있어 6개월 경과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에 비해 인터넷 서점에는 영상저작물 발행사로부터 발행년월일 정보를 제공받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영상저작물 목록에 발행년도와 별도로 발행년월일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라. 도서관에서의 공연에 대한 법개정 검토

본 조사를 통하여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이 도서관에서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작권법 제31조 1항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도서관이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한 것은 그 비용이 저작물 창작자에게 창작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상영정도로는 오히려 그 비용을 징수하려고 노력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Ⅵ. 결 론

본 연구는 2008년 2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공고되고 있는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중에서 도서관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2012년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징수규정」개정안에 대하여 5차례의 의견수렴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중 3개의 개정안은 내용상 변경이 있었다. 이후 2012년 11월말 개정된 「징수규정」이 공고되었으며, 곧이어 2013년 1월에 다시 개정안이 공고되었다. 2008년 이후 5년간 공고된 개정안에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해 부과된 금액의 편차가 약 60배에 달한다. 2012년 11월에 개정된 「징수규정」은 적용될 최소한의 기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개정안이 공고되었는데, 현행 규정과 동일한 이용에 대한 과금이 6배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편차는 과금대상이 되는 영상저작물이 실제로 공공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이 상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둘째, 84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 상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상영은 월평균 0.6회였고 1회 미만인 경우가 69개관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중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신탁된 저작물을 상영한 경우는 월평균 0.1회였다.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공연장의 좌석수는 101~150석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상영 현황 조사결과에 근거해 볼 때 그동안 공고된 「징수규정」 개정안과 현행 「징수규정」에서 도서관의 공연에 대하여 부과된 월정액제와 그 요금 및 과금액정 기준은 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그 빈도수에 근거해 볼 때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을 통한 과금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년단위 과금이 부과되더라도 그동안의 징수규정에서 보다 횟수에 따른 과금기준이 훨씬 세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상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공공도서관에서 상영된 영상저작물 중 극히 일부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료 징수기관은 정액제 기반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나 개별적인 허락을 통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서관이 영상저작물 공연을 위하여 발행 후 6개월이 지났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서관 목록정보에 영상저작물의 발행년과 더불어 발행월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 공공도서관 84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단체의 징수규정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영상저작물 공연은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과 관종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영상저작물 공연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 징수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이호신.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1호(2013. 3), pp.249-268.
- 정경희. “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3호(2012. 8), pp.133-155.
- 이영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동시 전송에 대한 법적 분류와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3호(2009. 6), pp.221-240.
- 이계오, 정연수. “노래연습장, 유희·단란주점의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개선안 연구.” 한국통계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2012. 5), pp.315-331.
-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서울 : 박영사, 2012.
- 임원선. 저작권법. 제3판.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2 경기도공공도서관연감. 수원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Gyeonggido Cyber Library. 2012 Gyeonggi Public Library Yearbook. Suwon : Gyeonggido Cyber Library, 2012.
- Joung, Kyoung-Hee.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6, No.3(Aug. 2012).
- Lee, Ho-Sin. "A Study on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Libra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7, No.1(Feb. 2013). pp.249-268.
- Lee, Kay-O and Chung, Yeon-Soo. "An Improved Sample Design for Estimating the Usage of Copyrighted Music Works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19, No.3(May 2012), pp.315-331.
- Lee, Yeong-Ju.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Legal Classification of Terrestrial Internet-Simulcasting and Copyright-Using Charge for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3, No.3(Jun. 2009), pp.221-240.
- Lim, Won-Sun. *Copyright Law of Korea. 3rd ed.* Seoul :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2.
- Oh, Seung-Jong. *Copyright Law. 2nd ed.* Seoul : Bakyoungsa, 2012.

